

원자력산업에서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대한 동향 및 대응방안
An Analysis on the Trend of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in Nuclear Industry

류재수, 이병욱, 양맹호, 이한명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150번지

Abstract

International nuclear export control regimes have been continuously strengthening through revision of guidelines to prevent a horizontal nuclear proliferation. Recently, they have been trying to include sensitive technologies, information exchange on export permission and supply conditions to their guidelin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current issues of the amended guidelines withi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and proposes a proper solution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national regulation.

1. 서 론

원자력은 20세기에 인류가 발견한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대규모 에너지원으로서 소량의 핵물질로부터 다량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원자력은 원자력 발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해수담수화,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생산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평화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목적으로 공히 이용될 수 있으며,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활동이라 할지라도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군사적 목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다. 불행히도 원자력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군사적 목적으로 먼저 사용되었다.¹⁾

1) 미국은 1942년 원자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Manhattan Project'에 착수하여 1945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였으며, 동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제조 기술, 부품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선진화된 산업 능력을 보유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선진 외국에서 필요한 품목을 들여와야만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통제는 모든 것을 자력으로 개발하고 조달하지 않는 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핵무기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원자력 수출통제는 1945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미국이 자국의 핵물질, 핵기술의 유출을 우려하여 세계 제2차 대전 중 우라늄 금수조치와 1946년 미국의 원자력법에 따른 수출금지 조치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원자력 수출통제는 1970년 핵비확산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발효, 1974년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의 지침발표, 그리고 1978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의 지침발표를 계기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들은 수평적 핵확산²⁾을 방지하고자 지침을 개정하여 왔다. 그러나 참여국들이 국제적 통제지침이나 정책을 이해하고 국내 수출통제 제도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규 개정,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등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핵비확산체제에 있던 이라크, 이란의 핵개발 의혹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 발각됨에 따라 수출통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은 더욱 증가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의 개요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통제 체제 내에서 논의되는 주요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수출통제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여 향후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의 흐름을 예측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2.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

오늘날과 같이 국제 교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원자력산업은 평화적 이용의 보증 아래 원자력 선진국 또는 공급능력을 가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³⁾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체제를 이용하여 핵개발에 필요한

2) 핵무기 보유국의 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핵비확산체제에서는 공식적으로 5개국을 핵무기 보유국(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이외의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할 경우 이는 수평적 확산에 해당된다.

3) 주로 양자간 원자력협력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핵물질, 부품, 기술 등을 구입하거나, 밀수, 암시장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획득하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⁴⁾

원자력 수출통제는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민감 기술, 장비나 부품 등을 불법으로 획득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중단시키거나 취득하는데 시간을 걸리게 하여 탐지될 위험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핵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체제의 목표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의 운용을 위한 지침이나 규정의 개정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지만 이러한 결정사항을 운영하고 해석하는 것은 각 참여국의 권한 하에 있다. 그러므로 수출통제체제의 이행은 해당 체제의 참여국들이 국내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수출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원자력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핵확산에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핵물질과 핵물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원자력 전용품목은 일명 트리거 리스트(Trigger List)로 불리고 있으며, 원자력 수출통제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중사용품목(Dual-Use Item)⁵⁾은 1990년대 초 이라크가 핵개발 계획에 서방으로부터 수입한 이중사용품목(Dual-Use Item)을 사용하였음이 밝혀지면서 1992년부터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원자력 전용품목에는 원자로, 핵물질, 핵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장비 및 부품 등이 있으며, 이중사용품목에는 공작기계, 고강도 알루미늄, 내방사선 카메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5년부터는 이러한 품목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해서도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에서는 수출제한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나, 수입국의 핵 투명성 정도에 따라 수출통제 적용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핵 투명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통제의 강도가 낮고 핵확산 의혹국이거나 NPT 또는 NSG 등 국제적 비확산 체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통제의 강도가 높다.

원자력 수출통제의 경우 수출의 전제조건으로 IAEA의 안전조치 수용, 수령국 정부의 평화적 이용 보증, 수령국이 해당 품목을 재이전할 경우 최초 공급국의 사전 동의 그리고 해당 품목의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조치의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 조건들은 대부분 양국간 체결하는 원자력 협력협정에

4) 최근 파키스탄의 카다르 칸 박사는 이란, 리비아, 북한 등에게 원자력 관련 장비 및 기술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5) 이중사용품목은 일반 산업용도로 사용되면서 핵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한다.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수입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이 핵개발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⁶⁾.

3. 원자력 수출통제체제의 동향 분석

가. 쟁거위원회(ZC)

2000년 NPT 평가회의 개최시 제기되었던 비동맹 그룹의 수출통제 투명성 증진 활동과 관련하여 2003년 NPT 평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의 개최시에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동맹 그룹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수출통제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한 기존의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ZC는 통제품목에 플루토늄 동위원소 분리 기술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모든 참여국이 각서를 교환하면 통제품목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현재 통제품목으로 되어 있지 않은 nuclear grade graphite powder⁷⁾의 통제 필요성을 역설하고 기술보유국간 협회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 품목도 ZC의 통제 품목 삽입을 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궁극적으로 통제품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은 이란의 원자력활동과 관련된 안전조치협정 위반과 관련하여 ① ZC가 NPT 당사국들의 안전조치협정 위반에 대해 절적인 조치를 취할 것, ② 모든 ZC 회원국들이 IAEA 9월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이란과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을 것, ③ 이란이 IAEA 안전조치 이행에 협조할 것과 추가의정서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하였다. 구체적 조치로서 미국은 ZC가 특별회의를 소집하여 ① IAEA의 안전조치 협정 검증시까지 통제품목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② 이란 문제와 같은 유사 사례발생에 대비하여 ZC 양해각서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란의 안전조치협정 위반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동의하는 분위기로 향후 ZC는 이란에 대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평가된다.

나. 원자력공급국그룹(NSG)

① 수출승인 정보교환

참여국들은 수출거부 실적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입국이 다른 참여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거부 실적만을 통보하기 때

6) 이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란은 이라크의 경우처럼 조약이나 협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수출국과 NSG는 이란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7) 미국은 흑연분말이 핵연료를 코팅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의 통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문에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의 2차 확산⁸⁾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없으며, 수출통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2002 NSG 총회에서 미국은 수출통제 시행자간에 수출승인에 관한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수출승인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① 비 NSG 국가들의 원자력 활동 추세 분석 및 이해 증진, ② 수출거부 통보 및 최종사용자 분석의 효과성 증진, ③ NSG 국가가 공급한 물품의 제3국 재이전에 대한 이해 증진, ④ 환적(transshipment) 문제에 관한 NSG 국가들의 이해 증진 등을 들고 있다.

다수 참여국들은 미국의 제안에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함을 표명하였다. 또한 다수 참여국들은 Part 1 품목의 수출승인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지지가 가능하지만, Part 2 품목의 정보교환은 행정적인 부담 가중, 상업적 비밀보호 문제를 지적하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일부 참여국은 Part I 품목의 경우 평화적 이용에 대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 보증,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이라는 뚜렷한 수출통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의 도입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현 단계에서는 참여국들의 자발적인 차원에서 거부통보와 No-Undercut 제도⁹⁾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제안이 핵확산 우려국들의 핵개발 방지에 유용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참여국간 합의가 없음을 감안하여 유보 또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참여국들과 양자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의제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② 핵테러 대응

NSG 참여국들은 대체로 미국의 핵테러 대응에 관한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추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테러리즘의 정의에 있어 일부 참여국들은 국가와 테러단을 구분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 참여국은 유엔이 테러리즘의 정의 문제를 다루는 보다 적절한 장(forum)이며, 핵테러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수출통제 체제의 역할에 대해 먼저 검토가 이루어져야

8) 북한과 파키스탄의 협력과 같이 비통제국가 사이의 협력을 말한다.

9) A 나라가 B 품목을 C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면 다른 국가들은 A 나라와의 협의 없이 B 품목을 C 국가로 수출하지 못하는 제도임.

한다며 지침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을 위시로 NSG는 핵물자가 테러와 관련된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허가 승인시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

③ Catch-All 제도 도입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핵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제조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체제가 확립되어 있어도 이란, 북한 등의 핵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수출통제 품목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NSG 내에서는 참여국들중 일부 국가에서 이미 Catch-all¹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Part II 지침에 포함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대다수의 국가들은 Catch-all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여국은 Catch-all 제도가 개별국가의 수출통제에서는 필요한 요소이나 NSG에 명시적으로 도입될 경우 Black List를 가지지 않기로 한 NSG의 취지와 반하여, 특정국가나 최종사용자를 Black List 또는 Watch List화 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였다. 또 다른 참여국은 Catch-all 제도 중 수출업자가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는 수용 가능하나, 수출업자가 인지한 경우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2003년 10월 개최된 CG 회의에서는 Catch-all 제도의 도입을 포괄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동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④ IAEA의 추가의정서 체결을 공급조건으로 부과

IAEA는 참여국들에게 추가의정서의 체결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의 진행이 느리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2년 미국은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함을 주장하면서, 추가의정서 체결을 수출승인의 전제조건 및 NSG 참여국 가입시 고려사항으로 검토할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대다수 참여국들은 수입국 핵활동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추가의정서를 공급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에 지지하였으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입장과 2005년도 NPT 평가회의의 논의 결과 후에 검토해 나가자는 입장으로

10) Catch-all은 국제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품목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국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내부 통제규정으로 이미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양분되었다.

현재까지 NSG는 상기 안의 논의시기를 결정하지 못하였지만, 궁극적으로 향후 NSG는 참여국간 협의를 통하여 2005년 NPT 평가회의 이후 IAEA의 추가의정서 체결을 수출의 공급조건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평가된다.

⑤ 핵개발 의혹국에 대한 정보교환

NSG 내의 일부 참여국들은 정보교환회의(IEM: Information Exchange Meeting)에서 이란의 비밀 핵개발 활동에 대하여 NSG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여기서는 이란이 Pu과 HEU 프로그램을 통하여 핵물질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설명하고, 참여국들에게 이란에 대한 수출, 특히 해외 위장회사에 특별한 경계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미국은 원심분리 농축시설, 중수생산시설 및 핵연료 제조시설 등 이란의 핵개발 시설들을 소개하고,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경계 품목(Watch-List)을 배포하였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참여국들에게 북한이 태국 및 홍콩 등을 경유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자력 관련 품목을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NSG 참여국들이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주요 비참여국에 대해서 대북한 수출통제를 계속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일본은 NSG의 통제품목이 아닐지라도 북한의 핵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비통제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NSG의 문제점

① 이행의 비신속성 및 비효율성

현재 세계의 기술수준은 급속하게 발전됨에 따라 기존의 통제품목으로는 효과적인 수출통제를 이행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통제 품목의 빈번한 개정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통제지침이나 품목의 개정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통제지침이나 품목이 개정되면 적시에 이를 각국의 국내법에 반영하여 시행해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반영 절차가 느리게 진행되어 통제품목이 유출되는 경우를 방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¹¹⁾. 또한 수출거부에 관한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하여야만 문제국가가 민감 품목을 구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간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한편, 원자력 수출통제체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국간의 합의(consensus)를 조건

11) 한 예로 개정된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하는데 1년이나 소요되는 국가도 있다.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 도출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NSG의 경우, 수출통제를 엄격하게 추구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여타의 참여국과 경제적 이익 추구에 비중을 두고 있는 러시아 등의 대립으로 통제지침이나 품목의 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② 법적 구속력의 미흡

현재의 수출통제체제에서 참여국들이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들을 동시에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한 이행 정도는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특히 각 국가마다 추구하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이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국들의 지침 이행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안전 예외조항(safety exemption) 등과 같이 일부 조항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장비나 기술을 공급하지만,¹²⁾ 이를 저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참여국은 NSG 지침의 모호함과 참여국간 지침의 상이한 해석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NPT 비당사국으로 원자력 전용품목이 이전된다면 NSG의 신뢰성에 손상을 입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협상에 있어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③ 효과성의 한계

참여국들은 수출거부 실적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수입국이 다른 참여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거부 실적만을 통보하기 때문에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서의 2차 확산¹³⁾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없으며, 수출통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미국의 수출통제체제 정책 및 전략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하여 NSG, ZC 등 여러 가지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가 운용되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핵무기 능력의 확보를 추구하는 국가들로의 수출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2) 러시아는 대다수 NSG 참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인도에게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상의 문제로 핵연료를 공급하였다.

13) 북한과 파키스탄의 협력과 같이 비통제국가끼리의 협력을 말한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의 회계감사원(GAO)은 수출통제 체제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여국들이 수출통제의 효과성 증진에 노력해야 하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무부(DOS)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첫째, 정보공유의 강화이다. 정보의 공유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출거부 정보의 적시통보 및 명확한 표준 통보양식의 확립이 필요하고 NSG 비참여국으로의 수출승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며,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해 자동 정보 공유 시스템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지침이나 통제품목의 개정시 개정 내용을 적시에 그리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참여국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침이나 통제품목 개정시 참여국의 법률에 즉시 반영하도록 지침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여국의 국내법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 체제의 주기적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지침의 정책이나 통제 절차에 관한 잠재적 변경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침 개정을 용이하게 하여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대체안을 마련하고, 통제체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의 진단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4. 결론 및 대응방안

국제적으로 원자력 수출통제는 9.11 테러 이후 그리고 이라크, 이란,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국을 위시로 하는 주요 선진국들은 신통제품목의 추가, catch-all 제도 도입, 공급조건으로서의 추가의정서 체결, 각국의 수출승인 관련 정보 교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통제의 강화에 대하여 많은 참여국들은 합리적인 방안을 유도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현재의 IAEA 안전조치보다도 강력한 체제로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지침을 적시에 반영한 국내 수출통제체제의 확립은 물론 효과적인 이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물론, 유관 산업체 및 해당기관들을 교육시켜 통제 품목이 우리나라에서 민감 국가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IAEA 추가의정서 체결 등 투명성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강화되는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 체제로부터 평화적 목적의 원

자력 산업 활동들에 대한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한국원자력연구소, “핵비확산 핸드북”, 2003개정판, 2003.
- 2)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대외정책연구”, KAERI/RR-2285/2002, 2002.
- 3)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대외정책연구”, KAERI/RR-2404/2003, 2003.
- 4) GAO, “Nonproliferation - Strategy Needed to Strengthen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2002.
- 5) NSG Homepage, <http://www.nuclearsuppliersgroup.org>
- 6) ZC Homepage, www.zanggercommittee.org
- 7) CITS, “Strengthening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A Nonproliferation Priority”, University of Goergia, 2002.